

2024년 4차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- 선거관리규정 및 지방조직운영규정 개정사항

■ 선거관리규정 개정사항

항목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제17조 【입후보자 등로】	3.지부장 또는 분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조합원은 소속 지부조합원 1/20이상 1/10미만의 추천을 받아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. 7.조합원은 각급 조직대표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.	3.지부장 또는 분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조합원은 소속 지부조합원 1/20이상 1/10미만의 추천을 받되 최소 3인 이상의 조합원에게 추천을 받아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. 7.조합원은 각급 조직대표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, 중복으로 추천된 경우 해당 조합원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.	

■ 지방조직운영규정 개정사항

항목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제3조 【구성】	① 본 조합 산하에는 KT본사, 지역(제주 포함)별로 지방본부를 설치한다. 단, 본사는 사업부서를 포함한다. ② 지방본부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부서, 부설기관 등을 연합하여 지방본부를 둘 수 있다. ③ 지방본부를 신설 또는 통·폐합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	① 본 조합 산하에는 KT본사, 지역(제주 포함)별로 지방본부를 설치한다. 단, 본사는 사업부서를 포함한다. ② 지방본부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부서, 부설기관 등을 연합하여 지방본부를 둘 수 있다. ④ ② 지방본부를 신설 또는 통·폐합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	